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56208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피항소인	A중앙회
	[redacted]
피고, 항소인	1. [redacted]시장
	[redacted]
	2.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7123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16.
판 결 선 고	2018. 11. 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4

피고 [redacted]시장이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18,651,970원, 지방교육세 65,854,330원, 농어촌특별세 94,751,800원(합계 1,679,258,100원, 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redacted]군수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9,474,810원, 지방교육세 22,840,250원(합계 292,315,060원, 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제5행 '따라서'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추징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별 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94조의 일반 규정에 따라 추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추징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환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침익적 제재라는 추징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므로, 다른 제재조치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제1심판결문 10쪽 아래에서 제7행 '상황에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4

(특히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우 개정 B협동조합법 시행 전인 2011. 11. 14.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까지 받아 착공한 상황이었다)

○ 제1심판결문 11쪽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개정 B협동조합법은 C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제134조의2 제4항), C가 구매·판매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곧바로 취득하여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에 해당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원고와 국회 사이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위험을 둘러싼 논의 후, 국회는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로 B협동조합법을 다시 개정하여, C가 조합 등과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조합 등에 대하여 경제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2조 제8항, 제9항). 즉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C 설립 당시에는 원고가 아닌 C가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오히려 원고는 위와 같은 법률의 미비를 해결하고 법률이 규정한 기한 이내에 C에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 B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뒤늦게 취득할 경우 2년 동안 직접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이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개정 B협동조합법은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C에 이관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경제사업을 이관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C 설립과 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4

시에 원고의 경제사업 전부를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용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도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C 설립 시에는 자회사 주식을 우선적으로 이관하였고, 그 후 순차적으로 다른 경제사업을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가 설립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곧바로 취득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